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7. 19 선고 2021가단35499 판결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4. 9 선고 2023나31805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7. 19 선고 2021가단35499 판결

전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론종결 2023. 5. 31.

판결선고 2023. 7.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6. D, 피고 B와 사이에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보통주식(D 29,100주, 피고 B 21,340주)을 500,000,000원에 양수하되, 양도인의 문제로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금의 2배를 양수인에게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12.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주식을 양도받지 못하자 ‘소외 회사가 추진하던 사업은 진행된 적이 없어 곧 취소될 상황이었고, D는 보유 주식에 대해 처분권한이 없었으며, 피고 B 역시 보유 주식에 대해 처분권한이 제한된 상태로서, 이들의 주식양도 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인 상태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D와 피고 B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다.

다. 원고의 위와 같은 고소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한 것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D는 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고단443호), 항소심에서는 ‘D가 소외 회사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보유 주식의 처분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기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노215호).

라. D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C과 자녀 F가 있었는데, F는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여 그 청구가 수리되었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노단340호), 피고 C은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그 청구가 수리되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노단352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6호증, 을나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회사가 추진하던 사업은 진행된 적이 없어 곧 취소될 상황이었고, D는 보유 주식에 대해 처분권한이 없었으며, 피고 B 역시 보유 주식에 대해 처분권한이 제한된 상태로서, D와 피고 B의 주식양도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인 상태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D와 피고 B를 고소한 2011. 8. 23. 이들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D의 상속인인 피고 C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과 그 2배의 손해배상액인 100,000,000원의 합계인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의 주식양도의무가 원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여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D를 사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50,000,000원을 교부할 당시 소외 회사가 강릉시장으로부터 2011. 5. 30.까지 폐기물처리업 시설 등을 갖추어 폐기물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받았고, 자금부족이 원인이 되어 음식물처리장 시설공사가 착공되지 않는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정과 2011. 5. 30.까지 공사착공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계획의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소외 회사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효력상실을 통보받은 것은 원고로부터 약정된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기존 대여금 채권자인 G의 반대로 음식물처리장 설치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나아가 D와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1. 1.경 위 G와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G로 하여금 위 ‘주식양도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E의 주식을 제3자에게 용이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위 서류들을 작성하여 준 것이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D와 피고 B의 주식에 관하여 G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D가 주식에 대한 처분권이 없거나 피고 B의 주식 처분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주장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의 주식양도의무가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인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택순